



문화체육관광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

1. 관련 근거 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사후관리), 제36조(과징금 부과) 및 제38조(폐쇄 및 수거 등)
2.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,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그간의 지자체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3. 최근에 불거진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와 관련, 문체부는 경찰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4. 이와 관련, 「게임산업법」 제36조 제2항에 따라, 관할 경찰 및 지자체가 압수·수거한 불법게임물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바,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불법게임물 폐기와 관련, 관할 경찰서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문화융합경제과장), 대구광역시(식품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(문화콘텐츠과장), 광주광역시(문화산업과장), 강원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대전광역시(4차산업혁명운영과장), 충청북도지사(문화예술산업과장), 울산광역시(문화예술과장), 충청남도지사(문화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콘텐츠산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경상남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문화정책과장), 전라남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부산광역시(영상콘텐츠산업과장), 경상북도지사(문화산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문화체육과장)

주무관 김철현 행정사무관 조용대 게임콘텐츠산업전결 08/29
과장 김규직

협조자

시행 게임콘텐츠산업과-2900 (2018.08.29.) 접수 문화융합경제과-8900 (2018.8.29.)
우 30119 (30119)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 / http://www.mcst.go.kr
텐츠산업과
전화 044-203-2447 /전송 044-203-3464 / popang@korea.kr / 대시민공개